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고병준 의원)

의안 번호	23-9
----------	------

발의년월일 : 2023. 2. .

발 의 자 :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남해석, 이상원, 차해영
최은하, 한선미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의회
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의회 체험 대상에 포함
되도록 함 (안 제2조)

3.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기타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2. 1. ~ 2023. 2. 5.

다. 개정조례안: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대안교육기관, 제6조제1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p> <p>2.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대안교육기관, 제6조제1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구의회사무국 의사팀 임현주
연 락 처	02-3153-6173

【관 계 법 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

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